

서울特別市永登浦區駐車場特別會計 設置條例案 審査報告書

1992. 10. 21
도시건설위원회

1. 改正理由

○영등포구민회관 개관에 따른 구민의 시설
이용에 편의를 제공코자 조례 내용중
일부를 개정하기 위함.

2. 主要骨子

○구민회관의 일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
때 임대할 경우에만 구의회의 사전 승
인을 득함.(별첨)

3. 參考事項

○신. 구조문 대비표-별첨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

서울特別市永登浦區民會館設置및運 營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
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 제2호중 “또는 대여”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2년 9월 18일
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1992년 9월 30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13회 영등포구의회
임시회 (폐회중)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
개회(1992년 10월 21일) 상정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제안설명자 : 지역교통과장 韓寬熙)

가. 제안이유

자동차의 급증으로 심각해지고 있는
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자치구에도 주
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지역단
위 주차수요와 실정에 적합한 시설확
충과 효율적인 주차관리로 시민주차
편익과 도시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기
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
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기 위함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4조(운영및관리) ① (생략)		제4조(운영및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		
1. (생략)		1. (현행과 같음)		
2. 구민회관의 일부를 임대 또는 대여 하고자 할때		2. _____(삭 제) _____		
3. (생략)		3. (현행과 같음)		

나. 주요골자

- (1) 설치시기 : '93. 1. 1('93회계년도)
- (2) 자치구 특별회계의 세입
 - (가)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
 - (나)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주·정차 과태료
 - (다) 당해 자치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 - (라) 시의 보조금
 - (마) 기타 주차목적 도로점용료등
- (3) 자치구 특별회계의 세출
 - (가) 주차장 설치, 관리, 운영 비용
 - (나) 불법 주·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전문위원 : 兪載漢)

집행부인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(안)을 검토한 바, 1991년 12월 14일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주차장법 개정에 의한 자치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장·단기적으로 계획을 수립,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 노상주차 및 주택가 골목주차로 인한 불의의 사고예방과 아울러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와같이 주차장 해결을 위하여는 주차와 관련한 모든 주차장의 관리를 철저히하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를 철저히 함으로 주차질서는 물론 교통소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,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영주차장 및 민영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여 그 시설에 따른 비용을

보조 또는 용자하여 주는등 주차장확보를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곳에서부터 확대해감으로 말미암아 몇년후에는 주차난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늦은감이 있으나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주차와 관련되어 얻어지는 모든 수입금 일체를 주차장 설치목적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특별회계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關聯法規

- 주차장법 제21조의2 (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)
-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(과태료의 징수금)
- 주차장법 제19조의2 (부설 주차장의 설치)
- 주차장법 제24조의2 (과징금처분)
- 주차장법 제30조 (과태료)
- 서울시 주차관리조례 제20조 (주차목적 주차점용료)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 론 요 지 : 없 음
- 6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
- 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- 8. 칙 부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1부. 끝.

서울特別市永登浦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案

의안 번호	112	제출년월일 : 1992. 9. 18.
		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- 1. 提案理由
 - 지역단위 실정에 맞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자치구 구청장도 특별회계를 설치, 운영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

개정되었으며,

→'91. 12. 14 주차장법 개정('92 7. 1 부터 시행)

- 주·정차 위반과태료등이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주차장 시설 확충에 투자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(시의회, 언론등)이 있고,
- 향후 주차수요에 대응하는 투자와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립, 집행하기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여 제정하려는 것임.

2. 主要骨子

가. 설치시기 : '93. 1. 1('93 회계년도)

나. 자치구 특별회계의 세입

-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
-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주·정차 과태료
- 당해 자치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- 시의 보조금
- 기타 주차목적 도로점용료등

다. 자치구 특별회계의 세출

- 주차장 설치, 관리, 운영 비용
- 불법주·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

3. 關聯法規

주차장법제21조의2

시장,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.

4. 制定根據

가. 주차장법제21조의2

나. 주차30400-919(92. 9. 3)호로 서울특

별시의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준칙안
시달

5. 豫算狀況

별도 조치 필요없음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

서울特別市永登浦區駐車場特別會計
設置條例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주차장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특별회계의 설치) 영등포구에 주차장 특별회계(이하 "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제3조 (세입)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.

1. 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영등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
2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3. 서울특별시의 보조금
4.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
5.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
6.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
7.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
8.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목적 도로점용료
9. 기타 잡수입

제4조 (세출)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1.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

- (이하 "공영주차장"이라 한다)의 설치, 관리 및 운영비
2.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
 3.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용자
 4. 불법주·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
- 제5조 (일시차입) ①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.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년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.
- 제6조 (잉여금의 처리)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.
- 제7조 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.
- 제8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.

1992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
審査報告書

1992. 10. 29.
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2년 10월 16일
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 일자 : 1992년 10월 26일

- 다. 상 정 일 자 : 제14회 영등포구의회
임시회
◎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(92. 10. 27) 상정 및 원안가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提案說明者 : 永登浦區廳長)

가. 제안이유

- 재정보조금 확정 內施에 따른 세입 재원 증가
- '92 결산 조정교부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세입재원 증가
- 지방자치법 제35조, 지방재정법 제29조 내지 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

나. 주요골자

○예산규모

구 분	예 산 액	기정예산액	증 감
합 계	77,095,518	75,314,969	1,781,000
일반회계	75,288,451	73,507,451	1,781,000
특별회계	1,807,518	1,807,518	

○주요재원

- 의존수입 ————— 1,781,000천원
- └ 재정보조금 — 1,078,000천원
- └ 조정교부금 — 703,000천원
- 자체경정재원 ————— 900,000천원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

가. 행정재무, 시민보사위원회 소관(전문위원 : 金熙中)

追更案에 대한 歲入豫算面을 보면, 追更豫算財源은 依存財源인 市補助金 1,078,000천원 및 조정교부금 703,000천원과, 自體更正財源 900,000천원인 총 2,681,000천원으로 依存財源은 우리區民의 直接的인 擔稅額이 아니므로, 歲入財源確保에 따른 問題點은 없다고 봅니다.